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2. 00. ~ 2022.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3,323	5급	1,733
1급 2항	3,134	6급 1항	1,581
1급 3항	3,000	6급 2항	1,455
2급	2,667	6급 3항	977
3급	2,493	7급	521
4급	2,092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38만6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1,751 2,030 1,720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1,518 1,762 1,493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557 804 528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455	3급	1,038
1급 2항	1,455	4급	637
1급 3항	1,455	5급	278
2급	1,212	6급 1항	126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구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96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75
3) 부모 또는 조부모	265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63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07
3) 부모 또는 조부모	38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1) 배우자	36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83
3) 부모 또는 조부모	7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